

EU,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04년 6월 10일 'EU의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을 위한 실행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 (이하 실행계획이라고 함)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실행계획의 작성

EU에서는 1985년에 전체 농지의 0.1%만이 유기농업으로 재배되었지만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고조되면서 2002년에는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가 전체 농지의 3.3%까지 확대하였다.

유기시장에 대한 유럽정보시스템(EISfOM)에 의하면 2002년 EU각국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되는 농지비율은 이탈리아가 8.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스트리아(8.71%), 핀란드(7.06%) 등의 순서로 유기농업이 재배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유기식품의 매출고가 10억 파운드를 돌파하는 등 EU지역의 유기제품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번에 제정된 실행계획은 EU의 유기농가나 식품안전성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번 실행계획은 2003년에 인터넷으로 실시한 유기농업에 관한 조사, 2004년 1월에 실시한 유럽 위원회에 의한 청취조사, 그리고 가맹국과 관련단체에 의한 회의결과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2. 4개의 축과 21개의 정책으로 구성된 실행계획

실행계획은, ①정보제공의 촉진, ②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③연구의 강화, ④유기기준과 수입·감독요건의 강화라는 4가지 축과 21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성되어있다.

2.1. 4개의 축

2.1.1. 정보제공의 촉진

EU의 소비자는 유기농업의 본질이나 장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EU 및 가맹국의 관련기관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2.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활용

유기농업은 공동농업정책(CAP)의 기본원칙인 환경과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유기농가는 직불제와 가격지지제도를 통하여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더욱이 유기농업은 현재 농촌개발정책에 포함되며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1.3. 연구의 강화

유기농업의 확대와 생산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 특히 새로운 기술이 요구된다.

2.1.4. 유기기준과 수입·감독요건의 강화

유기제품이 관행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생산시스템이 필요하다. 유기농업 존속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합의에 근거한 생산기준 설정 및 생산단계전체를 통한 신뢰성이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

2.2. 21개의 정책

2.2.1. 유기식품시장

[실행 1]

이사회 규칙 (EC)2826/2000(지역내 시장촉진)을 수정한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인을 조직화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소비자, 공공기관의 식당, 학교, 기타 식품체인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기농업의 장점 특히 환경면에서의 장점을 홍보하여 소비자의 유기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한 정책으로 유기 로고의 사용을 포함한 정보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정 소비자나 공공시설의 식당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제공 및 판매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러한 캠페인 전략을 실시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 가맹국 및 업계 단체와 공동의 대처를 강화한다.

[실행 2]

EU기준과 비교한 다양한 민간·국가기준(국제기준이나 주요수출시장에서의 국가기준을 포함)이 게재된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실행 3]

유기제품의 생산과 시장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다 많이 수집한다.

2.2.2. 공공정책과 유기농업

[실행 4]

EU 가맹국들이 유기생산과 관련한 과일·채소부문의 생산자 단체에게 제공하는 EU 조성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실행 5]

EU 집행위원회는 생산·마케팅·정보를 유기부문에 이용할 수 있다. 모든 EU 조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메뉴를 개발한다.

[실행 6]

EU 집행위원회는 EU가맹국들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농촌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유기농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 새로운 품질기준을 이용한 수요 창출
- 장기적으로 환경이나 자연을 보호하는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
- 농장전체를 유기로 전환하는 유기농가에 대한 장려금 정비
- 유기농가는 비유기 농가와 동등한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생산체인을 연결하여 유통이나 마케팅에 노력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 정비
- 확대사업에 대한 지원
- 생산·가공·마케팅을 포함한 유기농업관련 사람들에 대한 연수와 교육
-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쉬운 지역에서는 유기농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관리수단과 위치부여일 것(유기농업을 이들 지역으로 한정하는 않을 것)

[실행 7]

유기농업 및 생산방법의 연구를 강화한다.

2.2.3. 기준과 검사 : safeguard의 규범

[실행 8]

유기농업의 기본원칙을 정의함으로써 규제를 한층 투명하게 한다.

[실행 9]

기준을 강화하고 이행기간의 기한을 유지함으로써 유기농업의 규범을 확보한다.

[실행 10]

다음 항목의 유기농업기준을 완성시켜 정합성을 확보한다.

- 가공축산제품에 허용되는 첨가물이나 가공시의 보조 재료에 대한 리스트의 작성
- 유기와인을 위한 특별한 기준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 동물복지에 관한 기준개선
- 수산양식과 같은 기타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의 검토
- 환경(에너지이용, 생물다양성, 경관 기타)에 대한 기준개선의 필요성 검토

[실행 11]

기술적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전문위원회 설치

[실행 12]

이사회 규칙 (EEC)2092/91에 다음 조항을 포함시킨다.

- 유전자변형 작물을 사용한 제품은 유기로 표시 할 수 없다
-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제품(종자 이외) 가운데 유전자변형 작물이 우연히 존재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표시기준과 동일하지만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종자에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지 또는 어느 정도의 범위로 기준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유럽 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실행 13]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도입과 이

사회규칙 (EEC) 2092/91에 근거한 교차 감독의 필요성에 따른 민간·공공감독기관의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한다.

[실행 14]

유기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샘플링과 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EU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계속한다.

[실행 15]

EU 가맹국은 유기농지의 장소선정과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CAP상에서 확립된 토지구획 식별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

[실행 16]

감독단체간이나 감독단체와 이사회규칙 (EEC)2092/91에 근거한 집행당국의 협조관계를 개선한다.

[실행 17]

이사회규칙 (EEC)2092/91에 기초한 감독단체를 위한 특정의 인가시스템을 개발한다.

[실행 18]

EU 집행위원회는 EU가맹국의 위반형태나 건수를 포함하여 인가감독단체가 실시한 각 가맹국의 연차보고를 공표한다.

[실행 19]

현장평가를 포함한 동등성 목록에 제3국을 포괄하는 노력을 시작한다.
유기농업에 관한 이사회규칙 (EEC)2092/91을 수정하여 수입에 대하여 국가별로 설정된 예외 조치를 EU가 지정한 단체에서 기술적 동등성을 평

가하는 새로운 영구 시스템으로 이행한다. 이는 적절한 협의 후 또는 동등성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제3국의 활동에 대하여 동등이라고 인정되는 감독단체의 단일화된 영구적인 EU리스트의 개발을 포함한다.

제3국과의 동등성 정의에 대해서는 각국의 기후·농업조건·유기농업의 발전단계를 계속하여 고려한다. 이 시스템이 개시되면 모든 수입 제품에 EU로고의 사용을 제공한다.

[실행 20]

유기농업에 관한 EU기준, 코덱스·가이드라인, 유기농업운동에 관한 국제연맹(IFOAM) 기준을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EU가맹국, 제3국, 민간부문과 더불어 세계적인 협조 및 코덱스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동등성에 대한 다각적 개념의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유기농업에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수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EU의 개발정책하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 제고를 지원한다.

(WTO에 가맹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이가 있다. 보다 유리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WTO 기술적 무역장벽협정 제12조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유기제품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한다.

[실행 21]

각료 이사회로부터 교섭권한을 얻어 제3국에서의 EU 유기농업기준과 감독시스템에 대한 승인을 강화한다.

<http://www.maff.go.jp>에서

(신용광 ykshin22@krei.re.kr 02-3299-43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